

유사전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8.10.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점은행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장애 의한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장애 의한 학위수여에 관한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유사전공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은 평생교육원장, 심의대상 전공 학과장
2.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 : 심의대상 전공 전임교원 3인 이상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심의대상 전공학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평생교육원 담당자로 한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심의자료, 심의결과 등 관련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